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108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김병철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8.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3. 19. 접수 제34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D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48,730원 및 그 중 29,195,520원에 대하여는 1998. 7. 11.부터, 1,276,437원에 대하여는 2001.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5602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20. 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1.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3. 19. 접수 제342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46,848,730원 및 그 중 29,195,520원에 대하여는 1998. 7. 11.부터, 1,276,437원에 대하여는 2001.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흥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 177,500,000원

나) 소극재산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 211,075,986원

② F카드에 대한 채무 : 7,746,000원(=6,400,000원 + 846,000원 + 500,000원)

③ G카드에 대한 채무 : 7,040,000원

④ H카드에 대한 채무 : 2,600,000원

⑤ 합계 : 228,461,986원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인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내지 유증받기로 한 것을 단지 C을 거쳐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내지 유증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C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C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는 C의 유류분 상당의 권리는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재남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 지붕 21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

면 적 : 제20층 호 84.9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23687.8㎡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25576.9㎡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9264.7분의 39.45

- 이 상 -